# 표준계약서

<u>김피디</u>(이하 "위탁자"라 함)와 <u>expert</u>(이하 "수탁자"라 함)은 <u>KOBA 홍보영상 프로젝트</u>의 제작을 위탁하는 계약(이하 "본 계약"이라 함)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#### 제1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은 위탁자가 영상의 제작{또는 제2조에서 정한 업무(이하 "용역"이라 함)}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용역의 범위)

① 본 계약에 대해 수탁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<u>인공지능 및 블록체인을 경험한 KOBA의 신규 핀테크앱 홍보영상 프로젝트입니다. 홍보영상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프리랜서</u> <u>를 찾고있습니다.</u>

② 위탁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당해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. 단, 수탁자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 지출 및 과도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에 한(□)한다.

## 제3조 (계약기간)

- ① 본 계약의 기간은 <u>2021년 03월 25일</u>부터 <u>2021년 06월 20일</u>까지로 한다.
- ② 본 계약은 당사자의 온라인상의 동의 시 그 효력을 발생하며, 수탁자는 기간 내에 당해 용역의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.

# 제4조 (계약금액 및 지급방법)

- ① 본 계약에 기해 수탁자가 성실히 용역의 이행을 완료하는 대가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총 금 일만 원(세금 포함)을 지급한다.
- ② 위탁자는 제1항의 계약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되, 대금지급방법은 위탁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.
- 1. 지급방법: 계약금액의 100% 현금 지급(수탁자의 계좌로 송금한다.)
- 2. 지급시기: 2021년 06월 25일
- ③ 위탁업무 진행상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,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위탁자는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
제5조 (결과물의 귀속, 출연자 초상권은 별도 계약 필요)

본 계약에 기해 발생한 유·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(소유권,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 포함)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.

#### 제6조 (보증)

-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아니하고, 지식재산권,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바가 없음을 보증한다.
- ②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, 초상권 등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위탁자에게 민·형사상 소송 또는 이의 등을 제기하거나 민·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의 비용으로 위탁자를 방어하고 위탁자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는 등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.

#### 제7조 (비밀유지)

-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상대방 및 상대방 직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를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② 제1항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
## 제8조 (손해배상)

본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 제9조 (계약의 해석)

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고, 만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
# 제10조 (분쟁의 해결)

-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양당사자는 먼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위탁자와 수탁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.

### 2021년 03월 25일

ᆽ	人	
$\top$		•

성명 : expert

<>

"수탁자"

주소 :

성명 : <mark>김피디</mark>

<>

\*\${내용}은 수정불가